

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영옥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6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

발 의 자: 김영옥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영철,
김용호, 김재진, 김지향,
김태수, 남궁역, 남창진,
박성연, 오금란, 윤종복,
이봉준, 이상욱, 이성배,
이종태, 이종환, 임춘대,
최민규, 황철규 의원(20
명)

1. 제안이유

- 종전 「노인복지법」에 규정되어 있던 노인 일자리 관련 사항이 2023년 제정된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(약칭: 「노인일자리법」)로 이관되었으며 해당 법률이 2024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던 조례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정의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던 「노인복지법」 제23조의2를 “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”로 정비함. (안 제2조제2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지방자치법,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「노인복지법」 제23조의2”를 “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노인 일자리 전담기관”이란 <u>「노인복지법」 제23조의2</u> 에 따라 시가 설치·운영하는 노 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말한다.	2. ----- <u>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---</u> -----.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2조(정의)의 인용법령¹⁾을 변경한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명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[인용법령 정비취지] 현행 같은 조례 인용규정인 「노인복지법」 제23조의2가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이관(2023. 10. 31.)됨에 따라 본 개정을 통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관된 내용이 기존과 달라지지 않아 별다른 비용수반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